

# 아동 수당 제도 안내

센다이시 2024.12

아동 수당은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and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
**출생 또는 전입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.**

## 신청 방법

아동이 태어나거나 아동 수당 수급자가 다른 시구정촌에서 전입했을 때는 센다이시의 구청/종합지소의 신청창구에 「인정 청구서」를 제출하여 신청해 주세요.

- ◆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.
- ◆출생일 또는 전 거주지 전출예정일 (사유 발생일) 이 월말인 경우, **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**에 신청하시면, 사유 발생일 다음달분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우송 신청인 경우, 「인정 청구서」가 창구에 도착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.
- ◆공무원은 근무처에 신청합니다. 단, 고용 형태 등에 따라, 센다이시에 신청할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근무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근무처가 독립 행정법인인 경우, 근무처에 신청하지 말고, 센다이시에 신청해 주세요.

### 【주의】

- 「15일째」가 휴업일(토, 일, 축일 등)이라면, 다음 영업일이 제출 기한이 됩니다.
- 우편물 취급제도 변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우송기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.
- 항공연휴와 연말연시 등은 신청 창구에서 수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.
- **신청이 늦어지면, 늦어진 달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.**

## 구비서류

신청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 단 ②~⑥는 후일에 제출해도 됩니다.

### 【필수서류】

#### ① 인정 청구서※<sup>1</sup>

신청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,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.

※<sup>1</sup> 인정 청구서에 청구자와 배우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야 합니다. 「마이넘버 카드」 또는 「통지 카드※<sup>2</sup>와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(얼굴 사진 첨부)」을 지참해 주세요.

※<sup>2</sup> 개인번호 통지서가 아닙니다. 통지카드는 성명과 주소 등의 기재 내용이 주민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
#### ② 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확인 서류 (통장 또는 현금인출카드 사본)

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아동 명의 계좌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【해당자만 제출】

#### ③ 청구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알 수 있는 서류 사본(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통지서, 건강보험증 등)

3 세 미만 아동 양육자 중, 청구자가 가입한 연금 정보를 센다이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제출해야 합니다. 그리고, 「연금 가입 증명」을 별도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.

#### ④ 신립서

양육하는 아동과 별거하는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.

#### ⑤ 감호에 해당하는 생계비 부담에 관한 확인 서류

만 19 세가 되는 해부터 만 22 세 연도 말까지의 자녀를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제출해 주세요.

#### ⑥ 기타 필요서류

위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

## 지급 요건

### 【지급 대상 아동】

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0세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까지의 아동

### 【수급자】

다음①~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다이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※<sup>3</sup> 이 수급자가 됩니다.

- ① 지급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 중, 아동 생계를 유지하는데 비율이 높은 자※<sup>4,5</sup>
- ② 지급 대상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
- ③ 지급 대상 아동의 부모가 외국에 거주 중에 부모로 지정된 자(부모 지정자)
- ④ 지급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양부모 ( 신청 시 양부모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)
- ⑤ 위①~④ 이외로 지급 대상 아동을 감호하고 생계를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자

※<sup>3</sup> 주민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
※<sup>4</sup> 아동 부모(또는 양육자)각자의 소득액을 비교해서 소득이 많은 자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.

(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. )

※<sup>5</sup> 이혼 후 또는 이혼협의 중인 부모가 주민표상 별거(별도 세대)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주민표상 동거(동일 가구)하는 자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.

◆지급 대상 아동이 아동 복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자가, 양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.

◆DV(배우자 폭력 등)로 인해 다른 시구정촌에 주민표가 있는 상태로 센다이시에서 보호 생활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.

## 지급일 · 지급액

### 【지급일】

센다이시에서는 원칙적으로 (짝수 달)의 15일에 지급됩니다.

| 지 급     | 10월    | 12월      | 2월      | 4월     | 6월     | 8월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급대상 수당 | 8월・9월분 | 10월・11월분 | 12월・1월분 | 2월・3월분 | 4월・5월분 | 6월・7월분 |

◆15일이 금융기관 휴업일이라면,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.

◆센다이시 아동수당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, 수급자격 말소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다음달 이후에 지급됩니다.

### 【지급액】

지급 대상 아동 1명당 1개월분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.

| 수급자 구분       | 산정 수 · 연령 구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지급 월액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수급자        | 첫째아이 · 둘째아이※ <sup>6</sup> | 3세미만 (3세 탄생월까지) | 15,000 엔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세~18세연도말까지     | 10,000 엔 |
|              | 셋째아이 이상※ <sup>6</sup>     | 0세~18세연도말까지     | 30,000 엔 |
| 시설 양부모 등 수급자 | 3세미만 (3세 탄생월까지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5,000 엔 |
|              | 3세~18세연도말까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0,000 엔 |

※<sup>6</sup> 첫째아이, 둘째아이 등의 순서에 대하여

다음에 해당하는 아이를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"첫째아이", "둘째아이", "셋째아이..."로 계산합니다.

- ・ 청구자(수급자)가 양육하고 있는 0세부터 18세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.
- ・ 청구자(수급자)가 감호에 해당하는 생계비 부담(송금 등)을 하고 있는, 19세가 되는 연도부터 22세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.

##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비교할때 쓰이는 소득 금액

아동의 부모(또는 양육자) 중 두 명 이상이 지급 대상 아동을 감호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, 부모(또는 양육자) 각각의 소득을 비교하여, 소득이 더 많은 자(아동의 생계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자)가 수급자가 됩니다.

비교에 쓰이는 소득 금액은 아래 표의 소득 합계입니다.

| 소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소득 ※<sup>7</sup></li> <li>• 퇴직 소득</li> <li>• 산림 소득</li> <li>• 토지 등에 관한 사업 소득 등</li> <li>• 장기 양도 소득 (토지·건물 등)</li> <li>• 단기 양도 소득 (토지·건물 등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물 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</li> <li>• 특례 적용 이자 등</li> <li>• 특례 적용 배당 등</li> <li>• 조약 적용 이자 등</li> <li>• 조약 적용 배당 등</li> </ul> |

※<sup>7</sup>급여 소득, 사업 소득, 이자 소득, 배당 소득, 부동산 소득, 일시 소득, 잡소득, 양도 소득 (토지·건물 등 이외) 의 합계액.

##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

센다이시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, 종합지소 창구에 신고해 주세요.

- ◆수급자나 배우자, 아동의 주소나 성명에 변경이 생겼을 때
- ◆양육 아동 인원수에 증감이 있을 때 (출생/입양/파양 등)
- ◆수급자가 센다이시 외 (외국도 포함) 에 전출했을 때, 수급자가 아동을 감호하지 않게 되었을 때
- ◆수급자가 결혼, 이혼, 사망했을 때
- ◆혼인 등 사유로 아동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자가 변경되었을 때, 입금 계좌 명의를 변경되었을 때
- ◆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,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을 때
- ◆3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에 변경이 있을 때 (예: 국민연금⇔후생연금)
- ◆아동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,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
- ◆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,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
- ◆아동 양육자가 부모지정자에 지정되었을 때, 지정한 부모가 귀국했을 때
- ◆아동 양육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었을 때, 수급자가 미성년 후견인이 아니게 되었을 때
- ◆이혼 협의 중이며, 현재 수급자와 배우자·자녀가 별거하고 있고,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보호자(배우자)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(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신청 가능합니다).
- ◆이혼 협의 중에 아동과 동거하면서 부모 인정을 받고 있다가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
- ◆이혼 협의 중에 아동과 동거하면서 부모 인정을 받고 있다가 이혼 협의를 취소했을 때
- ◆셋째아이 이후의 추가 수당을 받고 있으며, 19세가 되는 연도부터 22세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에 대해, 감호에 해당하는 생계비 부담에 변경이 생겼을 때(예: 송금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등).

※위 사항 외에, 신청자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.

※신고가 늦어지면,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불금 반환을 청구될 경우가 있습니다.

※수급자가 센다이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에 전출할 경우, **전출 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할 시구정촌에서 신청해 주세요.**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월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.

신고 서류는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,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.

센다이시 아동 수당 홈페이지



## 현황 신고

아동 수당 제도는 현황 신고 (매년 6월 1 일에 있어서의 상황을 기재한 신고서) 를 제출받음으로써 매년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센다이시에서 6월 1 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,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단, 현황 신고 제출이 필요한 분에게는 6월 중순 경 센다이시가 안내문을 송부합니다.

【현황 신고 제출이 필요한 경우의 예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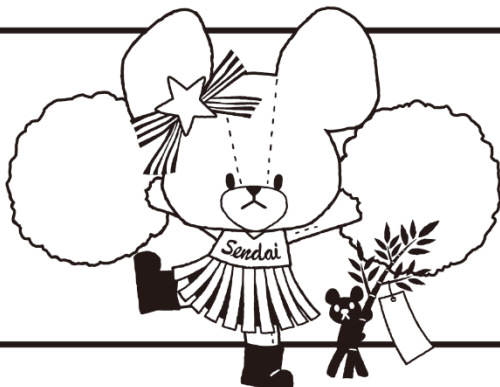
- ◆DV (배우자 폭력 등) 로 인해 주민표 주소가 센다이시가 아닌 자
- ◆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아동 (무호적 아동) 을 양육하는 자
- ◆이혼 협의하면서 배우자와 별거하는 자
- ◆미성년을 후견하는 법인, 시설 등 수급자
- ◆19 세가 되는 연도부터 22 세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를 포함한 3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, 19 세가 되는 연도부터 22 세의 연도 말까지의 자녀가 진학 외의 진로(취업, 무직 등)를 선택한 경우.
- ◆기타, 센다이시에서 제출 요청을 받은 자

**신청 · 신고 · 문의 창구** (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)

| 담당 창구    |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 전화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아오바 구청   | 보육급부와<br>육아급부계 | 〒980-8701 아오바구 가미스기 잇초메 5-1          | 022-225-7211 |
| 미야기노 구청  |                | 〒983-8601 미야기노구 고린 니초메 12-35         | 022-291-2111 |
| 와카바야시 구청 |                | 〒984-8601 와카바야시구 호슌인마에초 3-1          | 022-282-1111 |
| 다이하쿠 구청  |                | 〒982-8601 다이하쿠구 나가마치 미나미 산초메 1-15    | 022-247-1111 |
| 이즈미 구청   |                | 〒981-3189 이즈미구 이즈미추오 니초메 1-1         | 022-372-3111 |
| 미야기 종합지소 | 보건복지과<br>보육급부계 | 〒989-3125 아오바구 시모야야시 간논도 5           | 022-392-2111 |
| 아키우 종합지소 | 보건복지과<br>복지계   | 〒982-0243 다이하쿠구 아키우마치 나가후쿠로 오하라 45-1 | 022-399-2111 |

자주 묻는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아동 수당<자주 묻는 질문>



ジャッキーは仙台での子育てを  
応援しています

**子育てが楽しいまち・仙台**

くまのがっこう ©BN